

서울교육대학교 · 평생교육진흥원 간 사업 · 연구의 상호 교류 · 협력을 위한 협정서

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교육대학교는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.

제1조(목적) 서울교육대학교와 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양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평생교육사업 ·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.

제2조(협력 분야) 양기관은 아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평생교육관련사업의 연계와 상호협력
 - 1) 인생100세 학습뉴딜사업 및 은퇴교직자 재취업사업 연계 협력
 - 2) 성인문해교육·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다문화 교육지원사업 연계 협력
 - 3) 학부모지원사업 및 방과후교육지원사업 연계 협력
2. 평생교육사업관련 국내·외 각종 대회, 세미나 등 공동개최
3. 평생교육사업관련 정보 시설·교육자료 등 교육 인프라 교류
4.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협력

제3조(실무위원회 구성 · 운영) 양기관은 본 협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비용 부담) 양기관은 협력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소요경비는 협의를 거쳐 정하되,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 소요경비를 부담한다.

제5조(정보 및 자원공유) 양기관은 연구 및 사업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양기관의 연구자료, 데이터베이스, 시설, 장비,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인력교류) 양기관은 상호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사업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기간) ① 본 협정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양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②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매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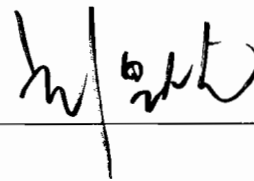
제8조(기타) ① 이 협정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,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양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②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, 양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③ 양기관은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한다.

2011年 6月 24日

평생교육진흥원
원장 최운실

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송광용

